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 사 경 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6. 4. 6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6. 4. 8
- 다. 상 정 일 자 : '96. 4. 29 (제44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 안 설 명 자 : 기획실장 정 부 응

나. 제 안 이 유

-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중 개별법규에 의해 별도위원회를 구성 심의 토록한 사항은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삭제하고 기타 법령 개정 등에 따라 관련규정의 자구를 수정보완 개정코자함.

다. 주요내용

- 중요한 조례규칙훈령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 삭제
 - ※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
- 농지개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 농지위원에서 처리할 사항 → 삭제
 - ※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의 대체 시행으로 농지위원회가 농지 관리위원회로 변경 읍면에 설치토록 됨.
- 근무성적 평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 삭제
 - ※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서 심의
- 물가안정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삭제
 - ※ 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서 심의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재휴)

- 본 조례개정안은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중 관계 법령의 개정 및 개별법규나 별도 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하는 중복된 사항은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화순군조례규칙 심의 회의 심의를 거치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5. 토론 요지

" 생 략 "

6. 심사 결과

「원안 가결」

7. 첨부 :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6. 4.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제3조 결정사항중 개별법규에서 별도위원회 구성 심의토록 한 사항은 삭제하고, 기타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자구를 수정 보완키 위함.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
-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4
-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화순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3. 주요 골자

- 제4호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폐지에 관한 사항 (삭제)
 -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로 대체
- 제9호 농지개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군정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삭제)
 - '96. 1. 1부로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의 시행으로 농지위원회가 농지관리위원회로 변경되어 읍.면에 설치토록 되어 있음.
- 제16호 공무원 평정규칙 제2조의 6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삭제)
 -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근무성적평정위원회로 대체
- 제20호 물가의 안정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삭제)
 -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로 대체
- 제33호 복합민원 종합조정심의, 불허민원 심의 (삭제)
 - 민원조정위원회로 대체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결정사항) 제4호 "중요한 조례.규칙 훈련의 제정, 폐지에 관한 사항"과 동조 제9호 "농지개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군정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삭제한다.

동조 제10호중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개발심의위원회"를 "농어촌정비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심의위원회"로 한다.

동조 제16호 "공무원 평정규칙 제2조의 6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삭제한다.

동조 제20호중 "주요물자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의 안정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주요물자의 원활한 수급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 제28호중 "초지법"을 "초지법 제4조의"로 한다.

동조 제33호중 "복합민원조정심의, 불허민원심의, 에너지 절약"은 "에너지 절약"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제3조 (결정사항)</p> <p>4. <u>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u></p> <p>9. <u>농지개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군정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u></p> <p>10. <u>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개발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u></p> <p>16. <u>공무원 평정규칙 제2조의 6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조정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u></p> <p>20. <u>주요물자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의 안정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u></p> <p>28. <u>초지법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u></p> <p>33. <u>복합민원종합조정 심의, 불허민원 심의, 에너지 절약 대책에 관한 사항</u></p>	<p>제3조 (결정사항)</p> <p>4. (삭제)</p> <p>9. (삭제)</p> <p>10. 농어촌 정비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 심의위원회 - - - -</p> <p>16. (삭제)</p> <p>20. 주요물자의 원활한 수급에 관한 사항</p> <p>28.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 - - -</p> <p>33. 에너지 절약 대책에 관한 사항</p>